

제 229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 12. 6.)

# 조례·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 목 차

---

-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1
-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1. 21.

나. 발 의 자: 이성복 의원 대표발의  
(이성복, 이홍희, 강철우, 표주숙, 권재경, 박희순, 김종두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1. 28.

## 2.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완료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9조)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1조)

마.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등

나. 예산 조치: 2018년 이후 예산반영에 검토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농촌진흥과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29. ~ 12. 0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제정현황

○ 도내 제정(1): 남해군

○ 전국 제정(4): 괴산군, 영양군, 구례군, 진도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완료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조례로 재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지침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리위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추진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 등이 있어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소득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10년 경과 후 시설물 이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현재 우리 군 관내 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이 10년 미만 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경비지원 등은 점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 양성평등기본법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2015년 농촌중심지(선도) 시행계획 협의 공통사항

### ① 절차 관련 사항

- 수정계획안에 대해 시·군내 실과, 道, PM단 협의후 농식품부 협의 추진
  - PM단 협의후 확인서명을 득하여 계획서에 첨부
  - 실과 협의서를 계획서에 첨부(인허가 및 관련법 검토사항 첨부)
-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관련, 계획된 사업이 관련법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붙임1 참조)

### ② 시행계획 개요

- 분야별·연차별 세부적인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틀을 설정하는 '총괄적인 사전 기획(연구)'이 필요하며, 이 내용을 **시행계획(총괄)**에 제시

### ③ 기본 계획 변경 사항

- 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시행계획 협의 시 위원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유와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주요 사안에서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별도 사전 설명)

### ④ 공정표 관련 사항

- 공정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H/W는 시설별로 부지매입-실시설계-인허가-착공-준공-인수인계-운영 등
  - S/W는 프로그램 기획-강사섭외-교육대상자 모집-실행-모니터링 등
  - H/W와 연계된 S/W의 단계별 일정과 추진내용 등을 포함시켜 작성
  - 세부사업간, H/W와 연계된 S/W간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되도록 작성

### ⑤ 추진현황 및 사업별 시행계획 관련 사항

- 시행계획 총괄표에서 사업별 연계성 제시,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제시 필요(각 사업별 추진현황 구체적 제시)
- 총괄표에 이어 세부 사업별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사업계획 개요, 필요성과 문제점, 기본방향, 세부사업계획, 프로세스, 세부 추진내용, 추진 내용별 주체(책임주체와 참여주체로 구분)의 역할을 제시
- H/W 및 관련 S/W사업 간 세부내용, 추진시기 등의 정합성 제고
  - 각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간 상호 연계되도록 수립
  - 동일성격의 사업들은 꾸러미화하여 제시(H/W + S/W)
- 현 외부컨설팅, 연구교육 의뢰 중심의 지역역량강화사업 한계성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유형 적극 검토 후 보완
  - ㉠ 거점복합시설등 HW사업 이후 시설을 지역에서 자력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 ㉡ 주민이 참여하여 발굴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추진

## 2015년 농촌중심지(선도) 시행계획 협의 공통사항

하는 주민주도 챌린지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 ㉔ 커뮤니티 비즈니스등을 위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등 주민공동체의 설립 및 창업지원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 ㉕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상생프로그램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p/g과 동일성격의 p/g은 지양

### ⑥ 투자 계획

- 투자계획은 연차별로 제시하되 구성은 패키지별(장소기반 등), 기능별(4대 기능 부문)로 구분하여 제시

### ⑦ 추진체계 운영계획

- PM단-행정-추진위원회의 연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추진
  - 사업별 운영계획에서 **운영주체의 발굴, 조직화, 역량강화 방안** 등을 제시
- 사업별로 추진위원회, PM단, 지자체간 **연계체계 및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 PM단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적정 전문가로 정비하되 이해관계자 참여는 지양
  - PM단 활동은 적정 예산을 배정하여 정례적 회의(월1회 이상)를 추진하고 **PM단이 시행계획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사업추진 및 준공후 자체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⑧ 운영관리계획

- **사업별로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역량강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보완
  - 준공후 지속적 운영가능토록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p/g 보완
  -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은 시설물별로 작성후 제시
-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 운영위원회와 세부사업별 참여주체· 운영관리주체와의 상호관계, 역할, 운영관리방안을 명확히 제시
  - 귀농귀촌 또는 분야별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 주체로서 참여 제안
- 가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준공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추진 검토

### ⑨ 기타

- 세부설계사항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시행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설계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본도면; A3 size)를 제시
- 계획수립기간, 공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계획을 현행화하고 연차별 사업비는 집행가능수준으로 수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1. 2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1. 28.

##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제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나. 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
- 실무반 구성을 상황관리총괄반, 12개 협업기능반,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으로 하고 실무반별 임무와 담당부서를 정함(별표 1)
- 재난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함(별표 2)

### 다. 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가동기준을 변경(안 제6조)

-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
- 자연재난(가동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사회재난별로 실무반 편성인원을 정함(별표 3 ~ 별표 5)
- 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안 제7조)
  - 비상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근무 편성·운영 근무인원 등을 정함
- 마. 파견근무자가 사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함(안 제10조)
- 바. 재난복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13조)
- 자. 본부장은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차. 위기경보의 발령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6조)
- 카.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 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별표 7)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7조·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0. 23. ~ 11. 1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6): 통영·사천·양산·거제시, 하동·창녕군

○ 입법예고(2): 김해시, 의령군

(7) 법제처 컨설팅 사례 반영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인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 수행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타법개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7.]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7., 2017.7.26.>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6.1.7.]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시행일: 2018.1.18.] 제6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3조제3항 관련)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관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3)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li> <li>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li> <li>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li> <li>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li> <li>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li> <li>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li> </ol>	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li> <li>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li> <li>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li> </ol>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li> <li>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li> <li>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li> </ol>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li> <li>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li> </ol>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li> <li>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li> <li>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li> </ol>	경제 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li> <li>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li> <li>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li> <li>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li> <li>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li> <li>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li> <li>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li> <li>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li> <li>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li> </ol>	기획 감사실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 반	재난관리 및 자원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 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 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 정책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 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 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 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안전총괄과  행정과
	수습상황 파악팀	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 기 능 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감사실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교통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 반	사회질서유지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 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 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화재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마.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 " "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농업기술센터
	나. 저수지 사고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가스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	경제교통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황사	환경과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교통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가. 건설과 나. " 다. 경제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공동구 위험물 사고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주간: 안전총괄과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 비고: 1.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메신저(NDMS)를 관리하며,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시스템(CBS)을 통하여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실과소 1명, 읍면 1명 비상대기 근무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주의보” 발표시
- 나. 태풍: 예비특보 발표시
- 다. 그 밖의 지진 및 화산 등: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통보 또는 화산재주의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12명+ a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12+a명	
상황관리총괄반	반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a)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9+a)	기획감사실(a), 행정과(1+a), 복지정책과(1+a), 경제교통과(1+a), 문화관광과(1+a), 산림과(1+a), 환경과(a), 건설과(1+a), 도시건축과(1+a), 농업기술센터(1+a), 보건소(a), 수도사업소(1+a), 거창경찰서(a), 거창소방서(a)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실과소 12명, 읍면 2명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 비상 2단계

###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통보,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 또는 화산재경보 발표시 등

### 2. 실무반 편성: 19+ 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19+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4+α명)	반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1)	- 행정과 직원(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과(2+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 비상 3단계

###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나. 태풍: “태풍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이 통보되고, 광역적인 피해 발생시(복합재난 등),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등

### 2. 실무반 편성: 24+ 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임무총괄	
총 24+α+β명		
근무인원	총 24+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	반장(1)	재난수습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주관부서(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1+α)	- 행정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1+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1+α), 건설과(3+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3+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9 + \alpha + \bet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임무총괄	
근무인원	총 $4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총괄반 ( $4 + \alpha$ 명)	반장(1)	재난수습주관부서 담당주사
	상황관리총괄팀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주관부서(2명)
	수습상황피악팀	
협업기능반( $\alpha$ )	기획감사실( $\alpha$ ), 행정과( $1 + \alpha$ ), 복지정책과( $2 + \alpha$ ), 안전총괄과( $1 + \alpha$ ), 경제교통과( $2 + \alpha$ ), 문화관광과( $1 + \alpha$ ), 산림과( $1 + \alpha$ ), 환경과( $\alpha$ ), 건설과( $2 + \alpha$ ), 도시건축과( $1 + \alpha$ ), 농업기술센터( $2 + \alpha$ ), 보건소( $1 + \alpha$ ), 수도사업소( $1 + \alpha$ ), 거창경찰서( $\alpha$ ), 거창소방서( $\alpha$ )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beta$ )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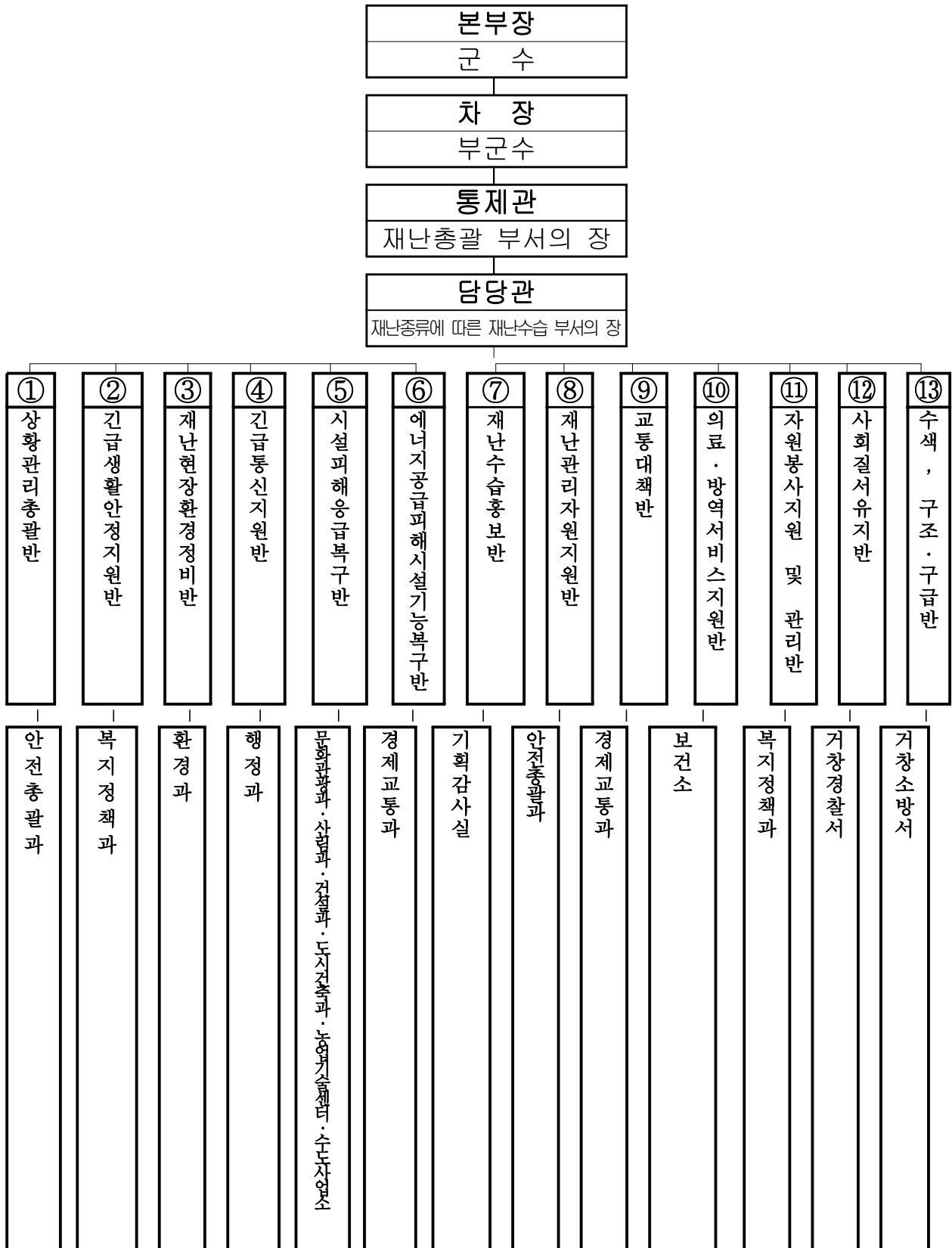
2. 협업기능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6]

## 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2항 관련)



[별표 7]

**사회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0조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킬로그램)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li> <li>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li> </ol>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li> <li>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li> <li>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li> <li>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li> <li>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li> <li>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li> </ol>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p>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p>